

의정부지방법원 2017. 9. 12 선고 2017가단4539 판결 [이득상환금 청구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7. 8. 22.

판결 선고 2017. 9. 1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. 10. 3.부터 2017. 5. 17.까지는 연 2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다만, 원고는 2017. 8. 22. 변론기일에 피고를 상대로

부당이득금이 아니라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고 정정하여 진술하였다).

2. 적용법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장현자

별지